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67
----------	-------

발의연월일 : 2026. 1. 6.

발 의 자 : 유영하 · 박대출 · 최형두
윤재옥 · 우재준 · 김재섭
추경호 · 윤한홍 · 조지연
강명구 · 이현승 · 구자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 또는 형사적 처벌 등으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대통령이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놓이거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최소한의 품위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예우가 정지된 전직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지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가 사면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경우”를 “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② ----- ----- ----- ----- ----- -----.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u>경우 <단서 신설></u>	1. ----- ----- <u>경우. 다만,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u>경우 <단서 신설></u>	2. ----- <u>경우. 다만,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